

서울고등법원

제 4 특 별 부

판 결

2000. 10. 6. 판결선고	
2000. 10. 6. 원본영수	인

사 건 2000누7492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

원고,항소인 1. 김

서울

2. 김

서울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

피고,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

소송수행자 판

변 론 종 결 2000. 9. 22.

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0. 5. 26. 선고 2000구221 판결

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1999. 11. 6.자로 원고들에 대하여

및 항소취지 한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 1.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
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390조에

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그렇다면, 원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
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10. 6.

재 판 장 판 사 김 목 민 _____

판 사 이 건 응 _____

판 사 이 정 미 _____